

# 서울중앙지방법원

## 제 34 민사부

### 판 결

사 건 2009가합37485 채무부존재확인  
원 고 ○○ 주식회사  
서울 중구  
대표이사 지○○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 
담당변호사 전재중  
피 고 송○○  
서울 마포구  
변 론 종 결 무변론  
판 결 선 고 2009. 5. 29.

### 주 문

1. 서울 마포구 ○○동 주택가에서 2009. 3. 1. 21:3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06가○○호 스타렉스 차량(이하 '이 사건 자동차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나. 피고는 2009. 3. 1. 21:30경 서울 마포구 ○○동 주택가에서 정차중인 이 사건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내리다가 다리를 접지르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를 당하였다.

다.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, 원고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기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,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.

### 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홍기태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최영은 \_\_\_\_\_

관사      설정은 \_\_\_\_\_